#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가. 의안번호: 1842

나. 발 의 자: 박영희 의원(찬성의원 8명)

다. 발의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 2. 제안이유

가파른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정보교환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 라. 프로그램 개발·보급(안 제5조)
- 마. 보조금의 지원 등. 정산, 보조금의 환수(안 제6조~안 제8조)
- 바. 지도·감독 등(안 제9조)
- 사.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안 제10조)
- 아. 안전점검(안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제24조, 제36조, 제37조,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나. 협조부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다. 예산조치: 성동구청장과 협의
- 라. 입법예고(2022.11.11.~2022.11.1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가파른 노령화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정보교화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노인 및 경로당의 용어에 대한 정의1)를 규정하였고

-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안 제4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시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시설 및 환경개선,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O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 제5조)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를 관내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sup>1)</sup>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 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sup>1.</sup>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60세이상의 자

<sup>2.</sup> 경로당: 65세이상의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O 보조금 지원 등 (안 제6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양곡구입비, 냉난방비<sup>2)</sup>,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 관리비, 명절 위문품 등의 비용<sup>3)</sup>을 경로당 규모, 이용 인원 등에 맞춰 차등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O 정산 및 보조금의 환수 (안 제7조~안 제8조)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관할 동장은 해당 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만일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어 지원금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을 재고하였으며

### O 지도·감독 등 (안 제9조)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회원관리, 보조금 사용 등 회계내역, 이용자 권익보호 및 민원 관련하여 지도감독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비를 환수, 축소,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 경로당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sup>2)</sup>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sup>3)</sup>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 2. 경로당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 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 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O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안 제10조)

구청장은 연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 및 격려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으며,

O 안전점검 (안 제11조)

연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급격한 노령화로 노령인구가급증함에 따라 과거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 역할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는 17.56%, 서울시 기준으로는 17.19%을 차지하고 있어 이미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겼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성동구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16.6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노인 인구 1천만의 초 고령화 시대를 바라보면서 경로당의 역할은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경로당은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우 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성동구에도 162개의 경 로당이 곳곳마다 실핏줄처럼 생활 밀착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 나라의 경로당은 숫자에 있어 세계적으로 첫째이지만, 시설의 협소와 미비, 운영재원의 부족, 조직적인 운영 계획의 결핍, 지역사 회주민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현대사회의 노인여가시설로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나라의 경로당과 비슷한 선진국의 노인시설(senior center) 의 경우 충분한 시설공간과 다양한 취미, 오락시설 및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경로당은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 전문가가 제시한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1)규모의 협소와 낙후

성 ②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공간과 설비의 부족 ③프로그램의 부재 ④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영세성 ⑤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부족 ⑥전 달체계의 미확립 ⑦운영주체의 경직성 등이며

- 해결책으로는 ①경로당시설과 설비의 확충 ②여가활동 프로그램의 보급과 전문화 ③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과 자원체계의 활용 ④ 정부지원의 확대와 차별화 ⑤운영책임자의 지도력과 전문성 확보 등 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로당을 보육시설, 노인그룹홈, 노인보호시설, 주 단기 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복지시 설로 전환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의 경우 관내 등록 경로당 수는 162개소(구립 47, 사립 115(주택 7, 공동주택 90, 임대 18)) 이며 이용자 수는 대략 5,3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노인 지원 정책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과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내에서는 15개의 자치구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92개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의 유사한 명칭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5)

<sup>4)</sup>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sup>5)</sup>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경로당'으로 검색한 결과

-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경로당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속화되는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로당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안전점검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당을 복합 복지서비스 장소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미등록 경로당<sup>6)</sup>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지 만 위험 건축물 등 어르신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비 하여 지원 계획을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로당에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거나 소외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 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sup>6)</sup>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등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써 지역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여가활동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